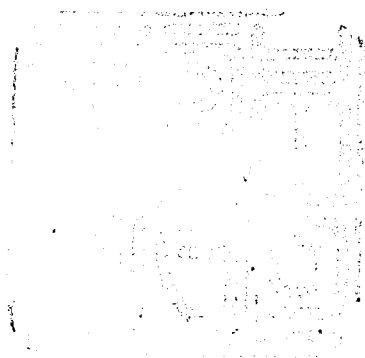


2010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Code of the Act and Regulations
for the Kaesong Industrial Zone



목차

◆ 개성공업지구 법규 현황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 남북협력기금법 117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128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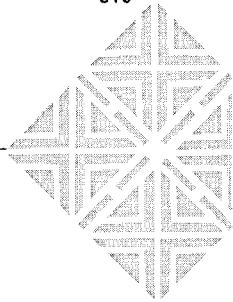
4. 개성공업지구법·하위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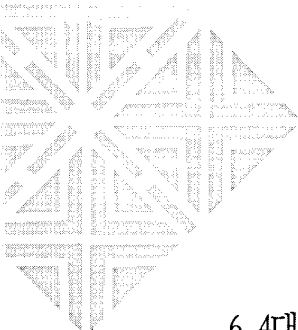
- 개성공업지구법 145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155

| | |
|-----------------------|-----|
|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159 |
|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166 |
| ●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188 |
|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198 |
|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203 |
|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210 |
|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219 |
|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223 |
|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228 |
|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243 |
|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249 |
|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264 |
|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270 |
|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280 |
|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290 |

5.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 | |
|------------------------------------|-----|
|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301 |
|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305 |
|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311 |
|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316 |





6. 4대 경험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27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335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54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362

7.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369
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376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38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396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410



개성공업지구 법규 현황

개성공업지구 법규 현황

1.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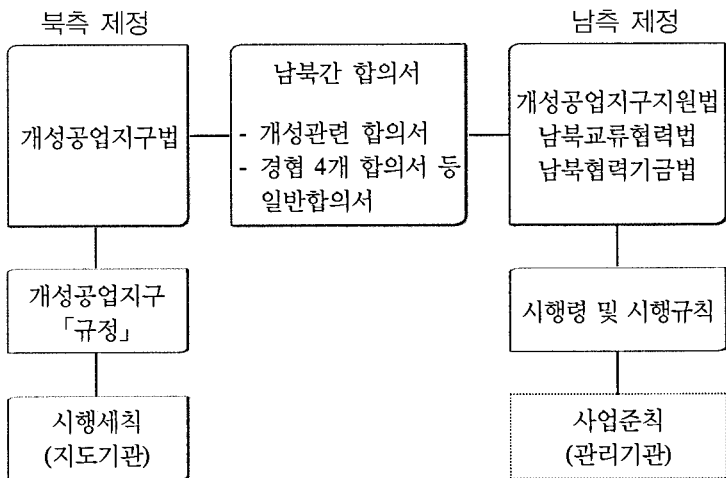
개성공업지구에는 남북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측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었으며,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와 같이 남북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의서 역시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된다.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고 체류하는 남측 기업과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26일 시행되었으며, 이어서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외에도 공업지구에서의 사업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법규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하위법규로는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등이 있다.

북측의 법체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20일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등 하위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규정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사업준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법체계도〉



2. 남북간 합의서

2000년 12월 16일 채택된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투자보장, 이증과세방지 등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고 있다. 이후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9개의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4개 합의서를 포함한 주요 남북간 합의서는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발효된 바 있다. 남북간 합의서는 남과 북의 “법률” 또는 “법”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는다.

가. 남북경협 4개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투자한 자산이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상대방 당국에 의해 수용되거나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등에 대해 쌍방이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경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는 청산결제방식의 대금결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 및 기타 합의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 외에도 개성공업지구 사업 및 남북 경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신, 검역, 도로운행, 열차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남북간 통행절차 및 신변안전 등을 담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출입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며 북측 개성공업지구법과 출입·체류·거주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어 개성공단의 통행과 관련한 법규 해석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2002년 12월 8일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살려 통신·통관·검역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 확인절차, 차량의 도로운행, 열차운행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또한 개성공업지구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분 | 남북간 합의서 |
|-------------------------|--|
| 남북경협 4개합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 개성공업지구 관련합의서 (4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 기타 관련합의서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

3. 남측 법체계

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동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에 남측 국내공단에 준하여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측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 안의 현지기업에 대해서도 남측 법률상의 기업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산업안전·환경보전·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자금·시설·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해 졌다.

개성공업지구 투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혜택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도록 하였다.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족내부거래의 취지에 맞게 왕래 및 교역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적용되는 질서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교역, 남북한 왕래절차, 물품 반출입의 승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남북한의 투자, 물품의 반출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약 20개의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등의 다양한 하위 법규가 제정되어 남북간 투자 및 통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법인·단체를 포함한 납축 주민에게 지원 또는 용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공업지구관리기관은 2009년 12월말 현재 46개의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준칙으로 규율되고 있는 중요분야는 부동산등록 및 집행, 기업창설·운영, 지적·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 구분 | 개성공업지구 사업준칙 | |
|-------------------|---|---|
| 기업창설 부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창설· 운영준칙 · 부동산집행준칙 · 토지계획및이용에 관한 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록준칙 · 지적준칙 · 하부구조시설관리준칙 |
| 건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준칙 ·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지침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세부지침 · 개성공업지구 건축사업자 선정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관한 세부지침 ·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세부지침 · 설계도서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
| 안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안전관리준칙 · 노동안전준칙 · 전기안전관리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관리준칙 · 소방준칙 |
| 보건 위생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관리준칙 · 수질환경관리준칙 · 폐기물관리준칙 · 소음진동관리준칙 ·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 세부지침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 · 공원녹지관리준칙 |
| 의화관리 광고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화관리준칙 · 야외광고물 기준세부지침 ·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와 번호판 부착 및 봉인에 관한 세부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준칙 · 자동차등록준칙 |
| 일반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준칙 · 주차장 관리준칙 ·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준칙 · 준칙 제· 개정절차 및 공포에 관한 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물자관리준칙 ·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 · 석유판매업준칙 · 행정절차운영준칙 |
| 기업회계 회계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 · 회계검증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기준 · 회계검증기준 |
| 출입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증발급준칙 | |
| 분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준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준칙 |

4. 북측 법체계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북측 법규는 개성공업지구법과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규정이 있으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제정하는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개성공업지구법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1월 20일 정령으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는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 금융, 관광지역을 포함하며 남측 및 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인·개인·경제 조직들도 투자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으며, 공업지구의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하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및 시행세칙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이 제정된 이래 2009년 12월말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어 기본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 | |
|--------------|---------------|----------------|
| · 개발규정 | · 기업창설·운영규정 | · 세금규정 |
| · 노동규정 | ·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 출입, 체류, 거주규정 |
| · 세관규정 | · 외화관리규정 | · 광고규정 |
| · 보험규정 | · 부동산규정 | · 기업재정규정 |
| · 회계규정 | · 회계검증규정 | · 자동차관리규정 |
| · 환경보호규정 | | |

아울러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성공업지구에 대하여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 출입·체류자의 보호, 조세지원, 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
|------------------------|----|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15 |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1.22] [법률 제9685호, 2009.5.21,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 ①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업무·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

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

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로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 ③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의료기관 등)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복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484호, 2007.5.2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이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 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
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
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
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
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 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통일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 (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 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 노동부장관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

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 (출입확인 및 출발·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 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사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

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0조 (정관) ①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

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7>
-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281호, 2007.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을 “기획재

정부·통일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48호, 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교역, 남북한 왕래절차, 물품 반출입의 승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31] [법률 제9745호, 2009.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 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 (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이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

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삭제 <2009.1.30>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의2 (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30]

-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③ 삭제 <2009.5.28>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 (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의2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3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5조의4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본조신설 2009.1.30]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

를을 준용한다.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 (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 (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4239호, 1990.8.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 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 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 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

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부칙 <제7539호, 2005.5.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1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 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745호, 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9.26]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정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협의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

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 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 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 (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제19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0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1조 (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반출·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7일 전까지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 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반입 유효기간
4. 반출·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

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협력사업

제27조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

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

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 (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사무소·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 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 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부

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1648호, 2009.7.3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 (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 제7조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다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 2009.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위반사항 | 해당 법 조문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 | 300만원 이하 |
|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복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 | 100만원 이하 |
| 3.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 100만원 이하 |
|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 | 100만원 이하 |
| 5.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 300만원 이하 |
|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5호 | 300만원 이하 |
| 7.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 | 300만원 이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31] [통일부령 제52호, 2009.7.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 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

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 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 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

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관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2호, 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 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
- 제3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반출·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남북협력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법인·단체를 포함한 남측 주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 남북협력기금법 | 117 |
|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128 |
|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39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 2009.5.28] [법률 제9744호, 2009.5.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전문개정 2009.5.28]

제5조 (장기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5.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09.5.28]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 (일시차입)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 (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

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4240호, 1990.8.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 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⑥ 내지 ⑪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 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6> 생략

<67>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 내지 <78> 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⑧ 내지 <16>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
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
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
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
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
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
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
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
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
항을 삭제한다.

<22> 내지 <31>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의 예탁

⑤ 내지 <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

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744호, 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10.10] [대통령령 제21079호, 2008.10.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2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05.12.14>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삭제 <2005.12.14>

제4조 삭제 <2005.12.14>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3.3.6, 1994.12.23, 1999.5.24, 2005.12.14, 2008.2.29>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5.12.14>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

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0>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남한과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② 제1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10>

제10조 (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2.12.30>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전문개정 2008.10.10]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 (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2005.12.14, 2008.2.29>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 (기금의 계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 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5.12.1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3237호, 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69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⑮ 생략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 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문화부장관·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내지 <70>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5> 생략

<96>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제11조, 제15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한다.

<97> 내지 <327> 생략

부칙 〈제16326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5> 내지 <109>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80호, 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1079호, 2008.10.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손실보조약정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보험약정으로 본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2] [통일부령 제49호, 2008.1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6.1, 2003.2.6, 2004.5.14, 2008.12.2>

1.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이상의 보증
- 5의2.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6, 2004.5.14, 2008.12.2>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미만의 지원
- 2의2.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용자가.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미만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도예외의 기금사용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
6. 삭제 <2008.12.2>

부칙 〈제384호, 19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 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호, 1998.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제7호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호, 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0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 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비지정통화의 인수 또는 보험계약 신청서가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



개성공업지구법 · 하위규정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의 기본법으로서,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창설·운영,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은 16개의 하위규정을 두고있다.

| | |
|-----------------------|-----|
| ● 개성공업지구법 | 145 |
|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155 |
|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159 |
|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166 |
|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 188 |
| ●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198 |
|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203 |
|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210 |
| ●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219 |
|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223 |
|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228 |
|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243 |
|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249 |
| ●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264 |
| ●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270 |
| ●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280 |
|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290 |

개성공업지구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2002.11.20)
'03.4.24 제3715호로 1차 개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 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

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 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 제15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4.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5.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접수, 보관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 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 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

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 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2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리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
- 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

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 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8조 (철거, 이설, 주민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자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제13조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치,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과제설계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문건사본을 접수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력사유적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력사유적 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3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 등록, 운영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투자당사자, 투자부문)**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공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상업, 금융,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할 수 있다.
- 제3조 (투자장려)** 공업지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 장려부문의 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같은 우대를 받는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 제4조 (기업창설형식)** 공업지구에서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 제5조 (기업의 규약)**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

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 보충 같은 내용을 밝힌다.

제6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

제7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과 관련한 준칙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창설신청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

힌 기업창설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 (투자기간)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형태) 투자는 화폐재산이나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2조 (기업등록신청) 투자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공업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신청내용) 기업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창설승인서 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사본, 투자실적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4조 (기업등록신청의 처리, 기업창설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부

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5조 (세관, 세무등록)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 일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은 공업지구세관에, 세무등록은 공업지구세무소에 한다.

제16조 (경영활동범위 및 업종변경)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주식, 채권발행)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

제18조 (경영물자, 제품반출입)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 없이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공업지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19조 (반출입신고)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은 물자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기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

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을 위탁 가공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결산) 기업은 반년, 연간을 주기로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연간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예비기금조성)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매꾸는데만 쓸 수 있다.

제23조 (기타 기금조성)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

제24조 (이윤배당) 기업은 연간결산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5조 (기업의 해산신고)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해산신고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6조 (청산위원회조직)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와 공

업지구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명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청산사업착수) 청산위원회는 성원명단을 승인 받은 날부터 15일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사업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28조 (청산위원회의 사업내용)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한다.
4.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 이밖에 청산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29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기업소득세로 납부하

여야 한다. 1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30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청산사업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공업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31조 (청산사업의 결속내용)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32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공업지구에서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납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 제3조 (세무사업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와 기업등록증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 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취소)** 기업의 세무변경등록은 통

합, 분리되었거나 등록자본, 업종 같은 것을 변경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 182일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수속을 기업이 할 수도 있다.

제7조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말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년간회계결산서, 고정재산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US\$로 한다.

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납부자에게 세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 세무소에는 세금납부통지서를 보낸다.

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득세는 다음연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안으로 한다.

제14조 (과납액, 미납액 처리) 수정신고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의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 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세무소가 검토했고 30일안으로 돌려 준다.

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기간) 세무등록, 세금납부는 정해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제16조 (합의서, 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사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세금의 부과,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에 정

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 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률)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리윤의 확정방법) 결산리윤은 기업의 총 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리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

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결산리윤에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리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 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사무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손실금의 총당기간) 경영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의 결산리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확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 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리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2분의 1을 예정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 전에 연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판

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US\$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와 년간기업소득세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통합, 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부터 2개월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
2.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리윤이 나는 해부터 2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년간 50%를 덜어준다.
3. 리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바쳐야 할 세금에서 덜어준다.

제30조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리윤이 나는 해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이 기간

경영손실이 난 해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1조 (감면신청서의 제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는 기업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연도, 총 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 것을 밝힌다.

제32조 (감면해주었던 기업소득세의 회수조건) 이 규정 제29조에 정한 기간전에 철수, 해산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미 감면하여 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한다.

제33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률) 영리활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와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안에서 얻은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리자소득은 소득액의 10%
2.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3.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제34조 (비영리지사 등의 세금납부기간 및 방법) 영리활동을 전

문으로 하지 않는 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수익단위가 다음달 10일안으로 신고 납부한다. 공업지구밖의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공업지구 안에서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소득지불단위가 소득을 지불하기 전에 공제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35조 (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에는 로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기술고문, 기능공양성, 상담 같은 경영봉사소득, 증여소득이 속한다.

제36조 (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세률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US\$ 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1에 따른다.
2. 증여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이 1만 US\$이상일 경우 이 규정 부록 2에 따른다.
3. 리자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의 10%로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세률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

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로 한다.

제37조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1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에 이 규정 부록 2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3.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4.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5.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제38조 (현금이 아닌 개인소득의 가격계산) 물품, 유가증권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계산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며 공업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대신하여 공업지구밖에 있는 기업, 경제조직, 단체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경우에는 지구안에 있는 기업 또는 비영리지사, 영업소, 사무소가 공제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0조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 개인소득세의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공화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리자와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소득
3.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리자소득

제4장 재산세

제41조 (재산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에 소유하

고 있는 영구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재산세의 납부당사자) 재산세의 납부는 매해 1월 1일 현재로 건물소유자가 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임대하였거나 저당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건물의 등록방법)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취득한 다음달 2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등록신청서를 내고 건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등록신청서에는 건물소유자의 이름, 주소, 건물명, 단위, 수량, 건평, 내용년한, 건설년도, 취득가격 같은 것을, 양도받은 건물은 양도자의 이름, 주소 같은 것을 밝힌다.

제44조 (건물의 등록가격) 건물의 등록가격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45조 (건물의 재등록) 건물소유자는 등록된 건물의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변경된 건물의 가격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46조 (재산세의 부과대상) 재산세는 등록된 건물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을 등록하였을 경우 건물등록증을 건물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3에 따

른다.

제48조 (재산세의 계산방법) 재산세의 계산은 등록된 건물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 안으로 재산세납부통지서를 건물소유자에게 발급하며 건물소유자는 재산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건물을 폐기한 자는 건물 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건물명, 폐기날짜, 납부한 재산세, 반환 받을 재산세 같은 것을 밝힌 재산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을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 (새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장 상속세

제52조 (상속세의 납부의무) 공업지구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화폐재산, 현물재산, 유가증권, 지적재산권, 보험청구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이 속한다.

제53조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다음의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한다.

1.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2. 상속 받은 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3.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4.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 같은 지출
5. 가족들의 부양료 30만 US\$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 상속재산의 가격은 재산을 상속 받을 당시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액이 10만 US\$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 부록 4에 따른다.

제56조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 받은 재산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뺀 후 남은 상속재산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57조 (상속세의 납부재산) 상속세는 화폐재산으로 납부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세를 화폐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품질,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힌 신청서를 공업지구

세무소에 내고 승인받은 다음 현물재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58조 (상속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6개월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액, 공제액, 상속세금액 같은 것을 밝힌 상속세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한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속세의 분할납부) 상속세가 3만 US\$이상일 경우에는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60조 (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의 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세의 부과대상) 거래세는 생산물의 판매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2조 (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5에 따른다.

제63조 (거래세의 계산방법) 거래세의 계산은 생산물판매액에 이 규정 부록 5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생산업과 봉사

업을 함께 하는 기업의 거래세와 영업세의 계산은 따로 한다.

제64조 (거래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생산물판매자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20일안으로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 부문같은 계절성을 띠는 생산부문 기업의 거래세납부 방법은 공업지구세무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 (거래세의 특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남측지역에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7장 영업세

제66조 (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영업세의 부과대상) 영업세는 교통운수, 체신, 상업, 금융,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과 건설부문의 건설물인도 수입금에 부과한다.

제68조 (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6에 따른다.

제69조 (영업세의 계산방법) 영업세의 계산은 업종별 수입금에 이 규정 부록 6의 세률을 적용하여 한다.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는 기업의 영업세 계산은 업종별로 한다.

제70조 (영업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영업세를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부구조부문기업의 영업세 면제) 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8장 지방세

제72조 (지방세의 납부의무) 기업과 개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73조 (도시경영세의 부과대상) 도시경영세는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로동보수, 리자소득, 배당소득, 재산 판매소득 같은 월수입총액에 부과한다.

제74조 (도시경영세의 세률) 도시경영세의 세률은 이 규정 부록 7에 따른다.

제75조 (도시경영세의 계산방법) 도시경영세의 계산은 기업의 월로임총액 또는 개인의 월수입총액에 이 규정 부록 7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76조 (도시경영세의 납부방법) 기업은 도시경영세를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도시경영세는 소득을 얻은 다음달 10일안으로 소득을

지불하는 기업이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자동차리용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한다.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차전차와 특수차가 속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유조차, 지게차, 세멘트운반차, 굴착기, 불도젤, 랭동차 같은 것이 속한다.

제78조 (자동차의 등록)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소유자의 이름, 거주지 또는 체류지, 자동차번호, 종류, 좌석수, 적재중량, 소유날자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내주고 그 사본을 공업지구세무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79조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 자동차리용세의 세금액은 이 규정 부록 8에 따른다.

제80조 (자동차리용세의 계산방법) 자동차리용세의 계산은 종류별 자동차대수에 이 규정 부록 8의 세금액을 적용하여 한다.

제81조 (자동차리용세의 납부기간 및 방법) 공업지구세무소는 매년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리용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안으로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새로 소유한자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안으로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자동차폐기시 과납세금의 반환) 자동차를 폐기한 자는 자동차폐기확인서와 함께 이름, 주소, 자동차명, 폐기일자, 납부한 자동차리용세, 반환 받을 자동차리용세 같은 것을 밝힌 자동차리용세반환신청서를 공업지구세무소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세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자동차를 폐기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리용세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83조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 면제) 자동차를 60일이상 연속 리용하지 않는 자는 공업지구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리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9장 제재 및 신소

제84조 (연체료) 기업 또는 개인이 세금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세금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85조 (제재대상과 벌금)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등록, 건물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86조 (신소 및 처리) 세금부과 및 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세무소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세무소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1〉

월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 NO | 월로동보수 | 세 률 |
|----|---------------|-------------------------|
| 1 | 500이상~1,000 | 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 2 | 1,000이상~3,000 | 20+1,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
| 3 | 3,000이상~6,000 | 160+3,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
| 4 | 6,000이상~ 1만 | 490+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5 | 1만이상 | 1,090+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부록 2〉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표

(금액단위 : US\$)

| NO | 증여소득액 | 세 률 |
|----|-------------|------------------------------|
| 1 | 1만이상~10만 | 1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 2 | 10만이상~50만 | 1,800+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3 | 50만이상~100만 | 2만 1,800+5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8% |
| 4 | 100만이상~300만 | 6만 1,8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1% |
| 5 | 300만이상 | 28만 1,800+3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

〈부록 3〉

건물에 대한 재산세

| NO | 건물용도 | 세 률(%) |
|----|-------|--------|
| 1 | 생산용건물 | 0.1 |
| 2 | 주택용건물 | 0.2 |
| 3 | 상업용건물 | 0.5 |
| 4 | 오락용건물 | 1 |

〈부록 4〉

상속재산에 대한 세률표

(금액단위 : US\$)

| NO | 상속재산액 | 세 률 |
|----|-----------------|---------------------------------|
| 1 | 10만이상~100만 | 1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6% |
| 2 | 100만이상~500만 | 5만 4,000+1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3 | 500만이상~1,500만 | 45만 4,000+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 | 1,500만이상~3,000만 | 195만 4,000+1,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 | 3,000만이상 | 495만 4,000+3,0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 NO | 구 분 | 세 률(%) |
|----|-------------------------|--------|
| 1 | 전기, 전자, 금속, 기계제품 | 1 |
| 2 | 연료, 광물, 화학, 전재, 고무제품 | 1 |
| 3 | 섬유, 신발, 일용, 가죽, 기타 공업제품 | 1 |
| 4 |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2 |
| 5 | 술, 담배, 기타 기호품 | 15 |

〈부록 6〉

영업세의 세률표

| NO | 구 분 | 세 률(%) |
|----|------------------------|--------|
| 1 | 건설, 교통운수, 채산부문 | 1 |
| 2 | 금융부문 | 1 |
| 3 | 상업부문 | 2 |
| 4 | 급양, 려관, 관광, 광고, 위생편의부문 | 1 |
| 5 |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봉사부문 | 1 |
| 6 | 부동산거래부문 | 2 |
| 7 | 오락부문 | 7 |

〈부록 7〉

도시경영세의 세률표

| NO | 납부의무자 | 세 률(%) |
|----|-------|--------|
| 1 | 기업 | 0.5 |
| 2 | 개인 | 0.5 |

〈부록 8〉

자동차리용세의 금액표

| NO | 구 분 | 세액(US\$) |
|----|---------------|----------|
| 1 | 승용차 대당/년 | 40 |
| 2 | 버스 | |
| | 12석까지 대당/년 | 40 |
| | 13-30석까지 대당/년 | 50 |
| | 31석이상 대당/년 | 60 |
| 3 | 화물자동차 제톤당/년 | 3 |
| 4 | 자동차전차 대당/년 | 10 |
| 5 | 특수차 대당/년 | 20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의 채용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노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 창설된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포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로력의 채용원칙)** 기업에 필요한 로력은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로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 제4조 (노동조건외 보장)**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 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 제5조 (로임외 제정)** 종업원의 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로임에 기초하여 기업이 정한다.

제6조 (로력동원의 금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는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없다.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종업원을 동원시킬 수 있다.

제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로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장 로력의 채용과 해고

제8조 (로력의 보장자) 공업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로력알선기업이 한다. 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로력알선기업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로력알선계약의 체결) 기업과 로력알선기업은 로력알선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은 기능시험, 인물심사 같은 것을 통하여 필요한 로력을 선발할 수 있다. 로력알선계약에는 채용할 로력자수, 성별, 연령, 업종, 기능, 채용기간, 로임수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0조 (로력의 채용계약) 기업은 선발된 로력자와 월로임액, 채용기간, 노동시간 같은 것을 확정하고 로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을 맺은 로력자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된다.

제11조 (로력알선료) 로력알선기업은 기업으로부터 로력알선료

를 받을 수 있다. 로력알선료는 로력알선기업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채용)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것을 밝힌 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로력채용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로동규칙의 작성과 실시) 기업은 종업원대표와 협의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하는 로동규칙을 작성하고 실시할 수 있다. 로동규칙에는 로동시간과 휴식시간, 로동보호기준, 로동생활질서, 상벌기준 같은 것을 밝힌다.

제14조 (종업원의 해고조건)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자기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2.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종업원이 남을 경우
3. 기술과 기능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4.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생활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제15조 (종업원의 해고) 종업원을 내보내려는 기업은 그 사실을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내보낸 종업원의 명단은 로력알선기업에 내야 한다.

제16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는 조건)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작업과정에 부상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병으로 치료받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신, 산전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인 경우

제17조 (종업원의 사직조건) 종업원이 사직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2. 직종이 맞지 않아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18조 (종업원의 사직절차) 사직하려는 종업원은 7일전까지 기업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기업은 사직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서 사직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보조금의 지불) 기업의 사정으로 1년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한다.

제3장 노동시간과 휴식

제20조 (노동시간)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종업원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한다. 기업은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48시간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분의 기업은 연간 노동시간 범위에서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 (노동시간의 준수) 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력채용계약 또는 노동규칙에 정해진 노동시간안에서 로동을 시켜야 한다. 연장작업이 필요한 기업은 종업원대표 또는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명절과 공휴일의 휴식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공화국의 명절일과 공휴일과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5일안으로 대휴를 주거나 해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3조 (휴가보장) 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중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2~7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한 녀성종업원에게는 60일간의 산전, 90일간의 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로동보수

- 제24조 (로동보수의 내용)**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기업은 종업원의 로동보수를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 제25조 (종업원의 월최저로임)** 기업의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50US\$로 한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 종업원 월최저로임을 높이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26조 (종업원월로임의 제정)**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업준비기간에 있는 기업의 종업원과 견습공, 무기능공의 로임은 종업원 월최저로임의 70%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7조 (휴가기간의 로임지불)** 기업은 정기 및 보충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녀성종업원에게는 60일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28조 (휴가비의 계산방법)** 휴가비의 계산은 휴가받기 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을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한다.
- 제29조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0조 (연장, 야간작업의 가급금) 기업은 로동시간밖의 연장작업 또는 야간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명절일, 공휴일에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밖에 야간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야간작업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 로동이 속한다.

제31조 (상금의 지불)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

제32조 (로동보수의 지불) 기업은 로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낸 자에게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로동보호

제33조 (산업위생조건의 보장) 기업은 고열, 가스, 먼지, 소음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같은 사업위생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여성로력의 보호) 임신 6개월이 지난 여성종업원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다. 기업은 여성 종업원을 위한 노동위생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5조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노동안전기술교육) 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기업이 정한다.

제37조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노동보호물자의 공급기준은 기업이 정한다.

제38조 (노동재해위험 제거) 노동재해위험이 생긴 기업은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즉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심의를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사회문화시책

제40조 (사회문화시책의 실시) 공업지구의 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의 종업원과 그 가족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문화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사회문화시책에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같은 것이 속한다.

제41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사회문화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보장한다. 사회문화시책기금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조성한다.

제42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업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시책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보험료밖의 다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제43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납부) 공화국국민인 종업원은 월로임액의 일정한 몫을 사회문화시책기금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 사회문화시책기금의 리용질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 (문화후생기금의 리용)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제7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6조 (벌금 및 영업중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100~2,000 US\$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벌금 및 영업중지는 사전에 경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제47조 (사회보험연체료)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매일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

제48조 (분쟁해결방법) 노동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동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49조 (신소 및 처리) 이 규정을 어긴것과 관련하여 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업과 종업원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의견을 제기하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의견 또는 신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1호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자와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은 개발업자가 한다. 설립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으로 된다.
- 제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시점은 개발업자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 (리사장의 지위)** 공업지구관리기관에는 리사장 1명을 둔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대표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 제5조 (리사장의 임명과 해임)** 리사장의 임명 또는 해임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른다. 그러나 초대리사장의 임명은 개발업자가 한다.

제6조 (기구와 정원수의 제정)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는 리사장이 정한다. 리사장은 공업지구의 개발계획과 그 실행정도에 맞게 기구와 정원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기관 성원의 자격과 조건)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전문지식과 해당부문의 사업경험을 소유한자가 될 수 있다. 공업지구 안에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 성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제8조 (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의 임명과 해임은 리사장이 한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 날부터 3일 안으로 그 명단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필요한 관리기관 성원의 요청)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꾸리는데 필요한 성원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리사장이 요구하는 성원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0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공인, 명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인과 명판을 가진다. 공인, 명판의 규격과 형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신청)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관

리기관의 설립준비사업을 끝내고 기관명칭, 기구와 정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관등록신청서를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등록, 설립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등록을 한 날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설립일로 한다.

제13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운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 지역으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에 대한 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년간지구개발계획)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년간지구개발계획을 자체로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년간지구개발계획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단계별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업연계)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사업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책임자회의 조직운영)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대표들로 기업책임자회의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하고 대책한다.

제17조 (의견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협의 및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지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정상적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총화자료는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으로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0조 (부족되는 운영자금의 보충) 부족되는 운영자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기업(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

포함)으로부터 받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월
노임총액의 0.5%로 한다.

제21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공업지구관리기
관은 예산을 자체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년간회계결산
서는 다음해 3월 안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낸다.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호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남측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 수송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해외 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출입사업기관)**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에는 출입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 제4조 (수속의 당사자)** 출입, 체류, 거주, 수속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나 초청단위, 대리인도 출입, 체류, 거주수속을 할 수 있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의 출입, 체류, 거주수속은 부모나 후견인이 한다.
- 제5조 (출입통로와 그 지정)**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출입사

업기관이 정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통로의 변경질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출입통로를 변경하려할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된 증명서를 가진 자
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가진 자
6. 출입, 체류, 거주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자

제8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과 자동차통행증의 발급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해당 증명서발급준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 (출입관련증명서의 발급정형통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인원, 수송수단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증명서의 발급정형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원의 출입) 인원은 여권(합의한 대상에 한함) 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열차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공업지구에 출입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동반자로 기재한 증명서를 소유한 부모 또는 후견인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 거주자는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가지고도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 (수송수단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통행증을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열차는 당국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 검역) 인원, 수송수단은 공업지구출입통로에서 출입검사, 세관검사와 위생검역,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안전과 출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을 과학 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분류 및 체류기간) 인원은 공업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체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류기일연장) 공업지구에 들어 온 자는 체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기일이 끝나기 3일 전에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체류등록) 공업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거주지, 체류목적, 기간 같은 것을 밝힌 체류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 (체류등록제외대상)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안으로 돌아가는 자
2.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3. 관광객
4.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제17조 (거주등록) 공업지구에 1년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 장기체류, 거주하려는 자는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직업, 체류 또는 거주하려는 곳과 기간, 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사진(3×4cm)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의 성인에게 발급한다. 미성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기재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체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 연장) 체류등록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은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해당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22조 (거주지변경과 그 등록) 공업지구에서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 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생, 사망, 결혼등록) 공업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 같은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등록신청서와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내고 해당한 등록을 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

일 안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증명서의 재발급) 거주등록증, 체류등록증,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같은 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자는 제때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업지구밖의 출입)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으로 가려는 자는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증의 발급신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수료)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 수속 같은 것을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 (증명서의 소지) 공업지구에서 체류, 거주하는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보장)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체류자, 거주자를 구속, 체포할 수 없으며 몸이나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29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의 반환) 장기체류, 거주하던 자

는 사업을 끝마치고 돌아가려 할 경우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0조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협의처리) 출입, 체류, 거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200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3호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 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운수수단에 적용한다.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세관의 설치)** 공업지구의 세관은 공업지구의 출입통로에 설치한다. 기업활동 또는 세관검사, 감독에 편리한 장소에도 세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업지구로 나드는 개인과 운수수단, 물자와 우편물은 세관이 설치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

제4조 (반출입신고제)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5조 (세관등록원칙) 공업지구에서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제6조 (반출입금지물품)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출입할 수 없다. 반출입금지물품은 이 규정의 부록으로 정한다.

제7조 (관세면제 및 부과원칙)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처리사항)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해당 법규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지역으로 나드는 세관사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0조 (세관등록 및 수속의 당사자) 세관등록 및 수속은 해당

기업 또는 지사가 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세관등록 및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세관등록기일) 기업, 지사는 기업창설 또는 지사 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업, 지사는 세관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기업 또는 지사등록증의 사본, 공인, 명판의 도안,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등록증의 발급) 세관은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해당 기업 또는 지사에 세관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조 (업종변경통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세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운수수단의 등록)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를 자주 오가는 운수수단(철도차량제외)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에 등록한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운수수단등록신청서) 운수수단을 등록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운수수단신청서에는 운수수단의 번호, 차종, 차형과 소

속, 생산년도, 배기량, 적재량 또는 정원수, 운행목적, 운행구간,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운수수단등록증의 발급, 유효기간 연장) 세관은 운수수단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해당 운수수단을 등록하고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운수수단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반출입신고서의 제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지사와 개인은 품명, 수량, 규격, 가격과 출발지, 도착지, 송화인, 수화인 같은 것을 밝힌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

제19조 (위탁가공물자의 신고) 기업, 지사는 공업지구밖의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하려할 경우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가공물자반출입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규격, 가공비와 위탁자, 수탁자, 가공기간, 가공장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의 신고) 열차로 수송하는 통과물자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안의 해당 철도역이 한다. 철도역은 열차가 도착하는 즉시 세관에 짐부침표, 차무이표, 짐나름표, 출하명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21조 (우편물의 신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보내 온 우편

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공업지구 우편국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는 해당 기업, 지사,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제22조 (휴대품의 신고) 개인은 휴대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한다.

제23조 (외화, 귀금속 및 보석의 신고)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없이 반출입한다. 그러나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반출입할 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 및 감독

제24조 (세관검사 및 감독기관) 공업지구에서 반출입물자와 우편물, 개인의 휴대품,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와 감독은 공업지구 세관이 한다.

제25조 (반출입물자의 검사지점)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물자의 도착지점 또는 출발지점에서 한다. 적은량의 산적집이나 짐칸봉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관통로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26조 (반출입물자의 검사방법) 반출입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자를 운수수단에 싣거나 부릴 때 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신고서와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는 정해진 장소

에서 우편국의 해당 일꾼 또는 우편물 임자, 대리인의
립회밀에 한다. 우편국은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우편물
을 내주거나 공업지구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소
포속에는 돈, 유가증권 같은 것을 넣을 수 없다.

제28조 (휴대품의 검사) 개인의 휴대품(따로 붙여 오는 짐 포함)
에 대한 세관검사는 기계로 한다. 기계로 검사할 수 없
거나 검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헤쳐 보는 방법
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 세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
구에 따라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9조 (운수수단의 검사지점) 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
당 도로 또는 철도의 세관통로에서 한다. 세관통로에
도착한 운수수단은 세관의 승인이 없이 세관통제구역
을 벗어 날 수 없다.

제30조 (물자수송의 감독) 세관은 세관통로와 도착지 사이 또는
출발지와 세관통로 사이의 물자수송에 대한 감독을 하
여야 한다.

제31조 (중계수송물자, 통과물자의 검사) 중계수송물자, 통과물
자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가 발생하였거나 금지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
당 물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반출입물자의 수송수단)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반출입

물자를 짐함, 유개차와 같은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산적으로 수송하는 물자, 적은 량의 물자는 짐함 또는 유개차가 아닌 운수수단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제33조 (검사 및 감독협조)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지사, 개인은 세관의 검사 및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설치) 공업지구에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기업, 지사는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에 대한 세관의 감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세구역, 보세창고운영) 보세전시장,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물자를 보관할 수 없다. 보세물자의 반출입과 보세공장에서 보세물자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는 작업, 선별, 재포장 작업 같은 것은 세관의 감독 밑에 한다.

제4장 관세 및 세관요금

제36조 (관세납부통지서발급)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기업 또는 지사에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관세기준가격과 계산)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따라 한다.

제38조 (관세납부)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기업, 지사는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한다.

제39조 (관세의 반환, 추가부과)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돌려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적게 부과한 물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통과시킨 날부터 1년안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시킬 수 있다.

제40조 (세관요금) 세관등록증, 운수수단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 지사 또는 개인은 해당한 요금을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요금은 세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제재 및 신고

제41조 (역류 및 벌금적용) 세관은 이 규정을 어긴 반출입물자와 운수수단, 개인의 휴대품을 역류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2조 (몰수) 금지품, 밀수품은 몰수한다. 밀수행위에 이용한 운수수단도 몰수할 수 있다.

제43조 (신고 및 그 처리기일) 공업지구의 세관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록 1. 공업지구에 들어 올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공업지구공사용으로 허가된 폭약, 뇌관, 남포심지, 도폭선 같은 것은 제외), 군수용품, 흉기
- 2) 배율이 10배이상 되는 쌍안경, 망원경, 160mm이상의 고정된 렌즈가 달린 사진기
-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 4)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5) 사회질서와 민족의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 인쇄물(사본한 것 포함) 또는 그 원고, 필림, 사진, 녹음녹화 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미술작품, 수공예품, 조각품
- 6)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들여오는 정해진 물품
- 7)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부록 2. 공업지구에서 내갈 수 없는 물품

- 1)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 2) 무전기와 그 부속품
- 3)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 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 4) 역사유물
- 5) 기밀에 속하는 문건, 출판인쇄물(사본한 것 포함)과 그 원고, 필림, 사진, 녹음녹화테이프, 소리판, 자기원판
- 6) 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물품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2004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6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외화관리당사자) 공업지구에서 외화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그러나 공화국의 외화수입금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외화의 범위) 외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1. 전환성외화 현금
2.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채권, 주식 같은 유가증권
3. 전환성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지불수단
4.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같은 귀금속

-
- 제5조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는 전환성의 화현금을 류통시킨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 (환자시세)** 류통화폐의 환자시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른다.
- 제7조 (기업의 외화돈자리개설)**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돈자리를 둘 은행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제8조 (투자은행의 업무내용)**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외국환자업무와 그밖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은행은 조선원과 관련한 환자업무를 할 수 없다.
- 제9조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 제출)** 공업지구에 설립된 투자은행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입출금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 제10조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의 업무내용)** 세금, 토지사용료, 사회보험료 같은 납부금의 관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종업원과 관련한 외화결제 또는 외화자금거래 업무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공화국 외국환자은행이 한다.

제11조 (예금의 비밀보장과 리자계산) 은행은 외화예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리자를 예금자에게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밖의 돈자리개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두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명칭, 소재지, 돈자리를 개설할 날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3조 (외화수입지출문건제출) 공업지구밖의 은행에 돈자리를 둔 기업은 반년마다 돈자리별로 외화수입지출문건을 작성하여 다음달 30일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지불 및 결제방식) 기업과 개인은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돈자리를 리용하여 거래에 따르는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결제는 송금결제, 신용장결제, 현금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제방식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 (개인의 외화보유) 개인은 번 외화 또는 공업지구에 가지고 들어 온 외화를 제한없이 소지하거나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제16조 (외화반출입)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외화를 제한 없이 들여 오거나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이 경우 귀금속밖의 외화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외화송금) 기업과 개인은 리운, 로임 같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업지구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은행거래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2004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호로 채택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표기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2. 《광고물》이란 광고의 내용을 담은 수단 또는 그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3. 《광고주》란 광고를 하려는 기업, 개인, 경제조직이다.
4. 《광고업》이란 광고물을 설계, 제작, 설치, 관리하는 것 같은 광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광고업자》란 광고업을 하는 기업, 지사, 영업소 같은 것이다.

제3조 (광고와 광고업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기업, 개인, 경제조직은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광고업도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사업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광고사업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광고업 합의,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개발업자와 합의한 다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업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6조 (광고업자의 자격) 광고업자는 광고의 계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설비를 갖추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의 수단) 광고는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를 리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인터넷 같은 것을 리용하여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제8조 (광고계약)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그와 광고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고계약에서는 광고주명, 광고업자명, 광고물의 형식, 규칙, 수량, 설치장소, 설치기간, 광고비, 위약책임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광고금지대상) 다음의 광고는 할 수 없다.

1. 북남관계발전에 저해를 주는 광고
2. 퇴폐적인 광고
3. 허위적인 광고

-
4.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광고
 5. 다른 기업,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

제10조 (광고내용의 정확성담보)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광고하려는 광고주는 광고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문자표기) 광고물의 문자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표기를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조선어로 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자의 명칭과 건물, 시설물, 부지의 리용동의) 제3자의 명칭 같은 것을 광고에 리용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기업이나 개인, 경제조직의 건물, 시설물, 부지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밝힌 야외광고물설치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4조 (야외광고물설치신청의 승인 또는 부결) 야외광고물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앞항에 해당되는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다.

제16조 (야외광고물의 설치금지구역)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 명승지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도시공고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리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 (야외광고물의 변경) 승인을 받고 설치하였던 야외광고물의 형식, 규격, 내용, 설치장소, 설치기간 같은 것을 변경하려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밝힌 야외광고물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8조 (야외광고물의 문화성보장)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야외광고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야외광고물의 철수, 정리) 야외광고물의 설치기간이 끝났을 경우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는 그것을 7일 안으로

철수하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던 장소를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광고업승인,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규정을 어긴 광고의 처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한 광고에 대하여 제때에 결함을 시정시키거나 해당 야외광고물을 철수시켜야 한다. 결함의 시정, 야외광고물의 철수와 관련한 비용은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광고중지, 광고업승인취소, 벌금부과 같은 제재를 둘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2004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3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거래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임대, 저당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이다.
2. 《개인》이란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생활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다.
3. 《부동산》이란 토지이용권과 건물, 거기에 달린 물건

-
- 이다.
4. 《토지임대기간》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5. 《분양》이란 부동산을 용도별로 분할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이다.
 6. 《양도》란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형태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7. 《매매》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8. 《교환》이란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고 차이나는 금액을 청산하는 행위이다.
 9. 《증여》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이다.
 10. 《상속》이란 부동산을 가진 자 또는 임차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위가 무상으로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행위이다.
 11. 《임대》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이다.
 12. 《등록임차권》이란 임대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자의 권리이다.
 13. 《저당》이란 부동산이나 등록임차권을 제3자에게 채무의 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제4조 (토지리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범위) 공업지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토지리용권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에는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이 속하지 않는다.

제5조 (관리기관)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등록과 취득, 양도, 임대, 저당에 대한 관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장 부동산의 취득

제6조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개발업자는 개발단계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에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취소사유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 (토지이용증의 발급과 토지이용권의 취득일)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토지이용증을 받은 날을 개발업자의 토지이용권소유일로 한다.

제8조 (토지임대기간의 계산) 토지임대기간은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토지이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맺은 날부터 계산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승인된 단계별 공업지구개발계획에 반영된 공사기간만큼 토지임대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9조 (부동산등록)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이용권, 건물별로 개발업자와 기업, 개인의 부동산관계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등록준칙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0조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가격, 요금) 부동산의 분양, 임대는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개발원가에 기초하여 분양가격과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의 토지이용권 소유와 효력) 공업지구에서 토지이용권은 분양,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권은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 안에서 분양 또는 양도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만큼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토지이용권등록신청서의 제출) 토지이용권을 취득한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토지이용권등록신청서에는 취득자의 이름과 주소, 토지의 위치와 면적, 분양 또는 양도 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분양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토지이용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토지이용권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13조 (분양할 수 없는 토지의 명의변경등록) 개발업자는 분양할 수 없는 도로, 공원 같은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해당 토지의 리용권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소유한다.

제14조 (토지리용권소유자의 의무)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업자에게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6조 (토지리용권의 취소조건) 합법적으로 소유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대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 1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리용권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거나 같은 조건의 토지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지리용권의 반환)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록증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증 또는 토지리용권등록증을 반환한 자는 6개월안으로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이 공화국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관되거나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리용권이 취소되었거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토지 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정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토지리용기간의 연장) 토지리용권을 소유한 자는 필요에 따라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공의 리익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연장신청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에 달린 건물이나 그 밖의 부착물에 대하여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건물소유조건) 건물은 그 부지에 해당한 토지리용권이 나 등록임차권을 가진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제20조 (건물의 소유방법) 건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있던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는 방법으로 소유한다. 건물소유권의 소유일은 건물을 새로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날로, 건물을 분양 또는 양도받았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21조 (건물의 건설조건) 건물을 건설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리용권이나 등록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토지이용권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22조 (건물소유권의 등록) 건물을 새로 건설한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증, 토지이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을 분양, 양도받은 자는 계약을 맺은 날 또는 계약에서 정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사본, 토지이용권등록증 또는 임차권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물소유권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

제23조 (양도, 임대, 저당의 방법)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을 등록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리용기간 안에 제한없이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부동산의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저당할 수 있다.

제24조 (양도, 임대, 저당에서 지켜야 할 원칙) 공업지구에서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관계자는 공정성, 성실성, 신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기, 투기 같은 공공의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 (양도, 임대, 저당의 등록) 부동산의 양도, 임대, 저당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으로 양도, 저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등록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차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양도, 임대, 저당의 변경등록) 양도, 임대, 저당사유가 없어진 것과 관련한 수속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한다.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도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 (같이 소유한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저당)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같이 소유한 자가 토지리용권 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할 경우에는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리용권도 함께 양도, 임대, 저당된다. 이 경우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양도, 임대, 저당등록을 할 때 함께 한다. 건물에 달린 토지의 리용권을 소유하지 못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양도, 임대, 저당하려 할 경우 토지리용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기, 강박으로 이루어진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하였거나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으로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양도, 임대, 저당의 취소금지 사유) 양도자, 임대자, 저당자는 양도, 임대, 저당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수자, 임차자, 저당권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등록임차권을 주었거나 저당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임대, 저당을 취소할 수 없다.

제30조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매매, 교환, 증여에 의한 양도는 계약을 맺고 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의 매매는 협상, 입찰, 경매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려는 자는 입찰 또는 경매절차와 방법을 사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부동산의 상속)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도로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상속자 판정, 상속재산 분배비를 같은

것은 사망당시 피상속자가 속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따라 정한다.

제33조 (상속의 등록) 상속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제34조 (임차자에 대한 통지) 임대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자는 임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35조 (양수자의 권리의무) 부동산의 양수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양도받은 부동산의 리용기간은 양도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남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36조 (부동산의 임대기간) 부동산의 임차자는 임대자의 토지리용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까지 해당토지 또는 건물을 리용할 수 있다.

제37조 (임차자의 임무) 임차자는 계약에서 정한 데 따라 부동산을 리용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임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차계약에서 밝히지 않은 한 제3자에게 임대받은 부동산을 재임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임차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제38조 (임대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 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임대건물의 보수의무) 임대한 건물의 보수는 임대자가 한다. 임대자는 임차자의 잘못으로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차자는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자기의 책임이 없이 한 건물 보수비용을 임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 (임대자의 계약취소권리) 임대자는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효력은 임차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제40조 (임대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정한 기간 안에 임대료를 3회 이상 물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1조 (임차자의 계약취소사유) 임대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

려는 임차자는 3개월 전에 임대자에게 계약취소 의향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자는 앞항의 경우를 제외한 계약의 취소로 임대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임대차계약의 즉시 취소사유) 임차자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자의 잘못으로 부동산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임차자의 책임이 없이 임차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임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그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43조 (임대보증금의 등록, 반환) 계약에 따라 임대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문 임차자는 임차권과 함께 임대보증금도 등록할 수 있다. 임대자는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을 반환받으면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44조 (임차자에 대한 보호)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는 임대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부동산을 경매한 자금으로 등록임차권을 소유한 자에게 해당한 임대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를 하

여 얻은 자금은 임차자와 저당권자에게 등록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제45조 (저당권의 설정, 처분)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가진 자는 자기나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또는 등록임차권을 저당할 수 있다. 저당권을 소유하려는 자는 저당권과 함께 채무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상환시기, 리자 및 그 지불시기, 기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항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덧저당) 저당자는 저당물을 다시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의 순위는 저당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47조 (저당의 통지) 임대자는 임대한 부동산을 저당할 경우 임차자에게 그 사유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 (저당물의 리용, 양도통지의무) 저당자는 저당물을 그대로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저당물을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9조 (저당권자의 권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저당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떨어진 가치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저당권의 행사범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같은 사유로 저당자가 받을 보험보상금, 손해보상금 같은 금액에 대하여서도 행사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 같은 것이 지불되기 전에 지불자에게 공업지구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권리 및 저당계약의 내용을 알리고 그로부터 보상금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당채무가 저당계약에 맞게 상환되었을 경우
2.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상환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제52조 (저당물의 처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상환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당자가 채무상환기간 전에 사망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저당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물을 공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3조 (저당물처분액의 분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금, 수수료, 저당물의 처분비용 같은 정해진 우선공제대상금을 납부하며 남은 자금을 임대 또는 저당 등록순위에 따라 임차자, 저당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임차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선불임대보증금 같은 것이, 저당권자에게 주는 분배금에는 원금, 리자, 위약금, 채무불리행에 따르는 1년간까지의

자연손해보상금이 속한다.

제54조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을 전부 지불한 때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록을 하여야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다.

제55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등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4장 제 재

제56조 (천연자원, 매장물의 채취에 대한 제재)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을 비법적으로 채취하였거나 그것으로 부당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7조 (토지리용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정해진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리용하였거나 또는 토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리용권등록증이 없이 리용하였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리용권을 양도,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8조 (건물등록 및 양도, 임대, 저당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건물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 임대, 저당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2004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5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이 아래부터는 공업지구라 한다)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납축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공업지구보험회사)** 공업지구에서 보험사업은 공업지구보험회사가 한다. 공업지구보험회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 제4조 (지사, 사무소의 설치)** 공업지구보험회사는 공업지구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 (보험사업원칙)**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조 (의무보험대상)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질적 손해
2.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의 재산에 입힌 손해
4. 종업원이 로동과정에서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 종업원은 제외)

제7조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피보험자라 한다)사이에서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제8조 (보험계약의 신청)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계약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제10조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않는다.

제11조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한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다.

제12조 (보험료 납부지체와 계약의 효력상실, 취소)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제14조 (보험위험의 변경통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

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해당
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
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보험대상의 관리상태 조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
대상관리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견
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사고통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
우 48시간 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보
험자가 들인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보험사고감정)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
관 또는 해당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보상청구서의 제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30일안으로 보험보상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과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
보상청구서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보험보상금지불기일) 보험보상은 보험자가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한다. 정당한 리유 없이는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21조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보상금 지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제22조 (보상청구권의 확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또는 허위신고를 하고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이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4조 (보험계약의 취소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
 2. 보험계약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3. 보험계약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제25조 (보험보상청구시효) 보험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 (벌금) 이 규정 제5조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27조 (분쟁해결)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제28조 (보험증권사항에 의한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8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회계계산과 회계 문건작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회계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계를 한다.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와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도 회계를 하여야 한다.
- 제3조 (회계업무)** 기업의 회계업무는 회계원, 계산원, 출납원 같은 회계일군이 한다. 회계업무량이 적은 기업은 회계 검증사무소에 회계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 제4조 (회계화폐와 단위)** 공업지구에서 회계화폐는 US\$로 한다. 기업의 경제거래규모에 따라 화폐단위를 천, 만, 백만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된 기업의 회계연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이다.

제6조 (회계문건의 작성언어) 회계문건의 작성은 조선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회계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7조 (회계준거규정, 회계관습의 적용) 공업지구에서 기업의 회계는 이 규정과 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 세금규정 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8조 (기업회계기준의 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공업지구기업회계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 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책임은 기업책임자가 진다. 기업책임자는 위법적인 회계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 (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장부

에 기록계산하며 주기별로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산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1조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이 회계계산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화폐자금을 입금하였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2.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인수하였을 경우
3. 재산을 인수 또는 발송하였을 경우
4.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거나 그것을 청산하였을 경우
5. 자본금, 기금이 증가하였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6. 수입 또는 비용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손익을 확정하거나 분배할 경우
8. 기타 회계계산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회계계산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용어를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계시의 설정과 분류, 계산시점, 재산평가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잉여금과 리익잉여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제13조 (회계서류의 작성) 회계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록을 검은색으로 한다.
2. 경제거래가 있는 즉시에 한다.
3. 양식에 따르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4. 금액을 조선말로 복기한다.
5. 경제거래를 지시하거나 집행을 책임진 자의 도장을 찍거나 그가 수표한다.

제14조 (회계서류의 발행, 접수) 기업은 경제거래를 시작하면 회계서류를 발행하거나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회계서류는 회계원이 보관한다.

제15조 (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회계서류를 접수한 기업은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효력을 가지지 못한 불비한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 보낸다.

제16조 (회계서류의 수정 및 재작성) 불비한 회계서류를 돌려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금액을 틀리게 쓴 회계서류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계시의 리용)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정한 회계계시

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경제거래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 거래는 류사한 회계계시에 합쳐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장부의 준비) 기업은 회계장부를 종합계산장부와 세분계산장부로 나누어 갖추어야 한다. 종합계산장부는 경제거래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계산할수 있게 분기일기장과 계시원장으로 나누며 세분계산장부는 계산 대상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장부의 작성) 회계장부의 작성은 검토 확인한 회계 서류에 기초하여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회계장부양식은 표준양식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계장부를 마감하기전에 틀리게 쓴것은 붉은 색으로 두줄을 긋고 다시 쓴다.
2. 회계장부를 마감한 다음에 틀리게 쓴것은 해당 분기를 취소하고 경제거래내용에 맞게 다시 분기하여 기록한다.
3. 회계장부에 올린 금액을 틀리게 쓴것은 추가로 분기

-
- 하여 바로 써넣는다.
4. 수정한 곳에 회계원의 도장을 찍는다.

제22조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은 취득원가에 기초하여 한다.
2. 교환, 현물출자,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정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3. 투자재산, 유형 및 무형재산의 생산, 구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리자비용과 기타 류사한 금융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4. 취득원가는 재산형태별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나눈다.

제23조 (수입의 계산) 수입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품, 제품의 판매수입은 그것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2. 위탁판매수입은 위탁받는 자가 위탁품을 판매하여 인도한 시점에서 한다.
3. 건설물인도, 봉사제공, 예약판매수입은 실행정도에 따라 한다.
4. 장기할부판매수입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4조 (비용의 계산) 비용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산원가는 제품생산과정에 실지 발생한 소비액에

-
- 기초하여 한다.
2. 판매원가는 판매수입과 관련되는 비용지출만을 포함시켜 한다.
 3. 판매비와 관리비는 실지 발생한 지출액에 기초하여 한다.
 4. 리자와 기타 금융비용은 기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한다.

제25조 (대차대조표의 작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를 재산, 채무, 자본으로 구분하며 재산과 채무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류동재산과 고정재산, 류동채무와 고정채무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리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의 해당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대차대조표의 배열을 류동성배렬법으로 한다.

제26조 (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익을 판매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기업소득세덜기전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한다.
2. 수입과 비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고 수입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
3. 수입과 비용을 발생기간별로 나누어 처리한다.
 4. 수입과 비용의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7조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익처분정형을 미처분리익액, 자체기금인입액, 리익처분액,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으로, 손실처리정형을 미처리손실액, 손실처리액,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한다.
2. 미처분리익액과 자체기금인입액의 합계를 리익처분액과 다음년도 조월리익액의 합계와 대비하고 미처리손실액을 손실처리액과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리익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8조 (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류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현금수입과 지출항목을 증가와 감소에 따라 상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 (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리익처분계산서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련관시켜 검토 확인하고 종합편찬한다.
2. 업종에 따르는 원가명세서를 첨부한다.
3. 당해년도와 지난년도의 회계자료들을 비교하여 표시한다.
4. 손익계산서를 보고식으로, 대차대조표를 계시식으로 한다.
5. 잘못 리해할 수 있는 회계내용에 대하여서는 해석을 첨부한다.

제30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년간회계결산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며 월, 분기, 반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라 작성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 회계결산서의 작성기일은 다음과 같다.

1. 월회계결산서는 다음달 6일까지
2. 분기회계결산서는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3. 반년회계결산서는 반년이 지난 다음 30일까지
4.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60일까지

제32조 (회계결산서에 대한 투표) 회계결산서에는 기업의 책임

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33조 (회계검증의무)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60일안으로 연간 회계결산서를 공업지구 회계검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의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제34조 (부당계산의 금지) 회계계산과정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채무, 자본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는 행위
4. 리윤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고 허위 리윤을 조성하거나 리윤을 숨기는 행위
5. 기타 공업지구 회계관련법규를 어기는 행위

제3장 회계문건

제35조 (회계문건의 구분과 양식)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양식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 (회계서류의 정의와 구분) 회계서류는 경제거래를 반영하는 회계계산의 기초물건이다. 회계서류에는 증표, 전표, 분기표, 집계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7조 (회계서류의 반영내용) 회계서류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의 제목
2. 발행번호와 날짜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경제거래근거와 내용
4. 경제거래용도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
6. 발행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제38조 (회계장부의 정의와 구분) 회계장부는 회계서류에 반영된 경제거래를 일정한 양식 또는 계산표에 기록계산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장부에는 분기일기장, 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 같은 것이 속한다.

제39조 (회계장부의 반영내용) 회계장부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기업명칭 같은 것을 밝힌다.
2. 첫페이지에는 목록을 쓰고 목록별 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 번호를 쓰고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짜와 분기표번호, 경제거래내용과 금액 같은 것을 밝

한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40조 (회계결산서의 정의와 구분) 회계결산서는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주기별로 기업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손익처분, 현금류동의 결과와 원인을 반영하는 회계문건이다. 회계결산서에는 결산서, 결산서 주해, 재정상태설명서가 속한다.

제41조 (회계결산서의 반영내용)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간서, 리익처분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결산서주해에는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설명, 중요항목의 명세자료와 결산서의 리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타 자료를, 재정상태설명서에는 생산경영상태의 중요내용, 리윤의 확정과 분배상태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42조 (회계문건의 보존기간) 회계문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계서류 5년
2. 회계장부 10년
3. 년간회계결산서 10년
4.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는 기업의 규약에 따른다.

제43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 회계문건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계서류는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날부터 한다.
 2. 회계장부는 장부를 마감한 날부터 한다.
 3.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은 날부터 한다.

제44조 (회계문건의 보관) 회계문건은 회계부서책임자의 책임 밑에 해당 기업에 보관한다. 통합, 분리, 해산되는 기업은 해당 리사회에서 보관인과 보관장소를 정한다.

제4장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제4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는 기업의 회계감독사업을 담당할 감독부서를 둘 수 있다.

제46조 (회계감독방법) 회계감독은 회계결산서와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기업의 회계사업정형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내부의 회계검증제도) 기업은 종합계산장부작성업무와 재산보관업무, 내부회계검증업무를 분리시키며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투자, 재산처분, 자금공급 같은 중요경제업무를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 (출납업무의 겸임금지) 기업은 출납업무와 회계장부기

록계산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를 겸임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9조 (회계업무인계) 조동, 동원, 병치료, 해임 같은 사유가 있는 회계원은 제3자의 립회밑에 회계사업을 인계하여야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의 책임자가 한다.

제50조 (손해보상) 회계업무집행과정에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 (업무중지) 회계결산서작성에서 중요자료를 무락시켰거나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6개월부터 1년까지 업무를 중지시킨다. 돈, 물품을 받고 사실과 어긋나게 회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52조 (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결산서를 사실과 어긋나게 작성하였거나 의무적인 회계검증을 거절,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 \$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정당한 리유없이 회계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하였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업이 년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
4.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 계산, 보고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몰수하고 1만 5,000US \$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위법적인 회계계간을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 \$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53조 (연체료적용)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보낸 다음 7일이 지난날부터 한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2005년 6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채택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기업의 자본조성과 리용, 리윤분배, 자본청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재정관리를 규범화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영리활동을 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이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3조 (자본의 조성방식)** 기업은 자본조성을 출자, 신용, 증여, 리윤저축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 (등록자본)**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 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 제5조 (등록자본의 규모)**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이상으로 한다. 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여야 한다.

제6조 (투자의 형태) 기업은 투자를 화폐재산, 유형재산, 무형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폐재산의 투자는 전환성외화로 하여야 한다. 무형재산의 투자액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다.

제7조 (투자의 인정시점) 투자의 인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입금시켰을 때
2. 부동산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수속을 끝냈을 때
3. 부동산밖의 유형재산은 공업지구에서 정해진 수속을 끝냈을 때
4. 무형재산은 도입 또는 리용으로 경제적리익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 (투자재산의 가격)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다.

제9조 (유형재산의 내용년한)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축물은 20년 이상
2. 철도차량, 선박과 기계 같은 생산설비는 10년 이상
3. 철도차량, 선박을 제외한 수송수단은 5년 이상
4. 전자설비와 취득원가가 300US\$ 이상인 공구, 비품은 3년 이상

제10조 (유형재산의 감가상각) 유형 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형태와 리용방식, 과학기술발전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유형재산의 잔존가치평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5%이하로 평가할 수 없다. 기업은 유형재산의 잔존가치를 5%이하로 평가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세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무형재산의 내용년한)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 또는 기업설립신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무형재산의 내용년한은 예상수익기간으로 하며 예상수익기간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무형재산의 감가상각) 무형재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생산고비례법에 따라 한다. 무형재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제14조 (감가상각의 금지) 기업은 경영활동에 리용하지 않는 고정재산과 건설중에 있거나 완성하지 못한 고정재산, 시일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물품구입과 생산제품판매) 기업은 물품을 국제시장가

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국제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 (원가, 비용계산의 금지대상) 원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지출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구입을 위한 자본지출
2. 자기 자본에 대한 리자
3. 일반리자률보다 높은 리자
4. 본사에 지불한 특허권사용료
5. 대외투자 및 관련기업을 대신하여 지출된 관리비
6. 기준을 초과한회수불가능채권 및 대외사업비
7. 몰수당한 재산손실액, 위약금, 연체료, 벌금, 보상금
8. 당기순리윤으로 적립한 예비기금
9.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

제17조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5년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대손충당금은 회수불가능한 판매채권, 대부금, 미수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일반기업은 당해년도말 채권잔고의 1%, 금융기업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9조 (퇴직보조금지불 대상자와 규모) 기업은 1년 이상 일하

다가 퇴직하는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퇴직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퇴직보조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퇴직보조금지불총당금의 설정한도) 퇴직보조금지불총당금은 퇴직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자금이다. 기업은 1년이상 일한 종업원, 관리성원에게 지불하는 월로임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조금지불총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 (종업원의 로임)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공업지구 종업원월 최저로임보다 낮지 않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2조 (관리성원의 로임) 기업은 관리성원의 로임기준을 세금납부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규약에서 정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로임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3조 (종업원의 상금) 기업은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전액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제24조 (관리성원의 상금) 기업이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종업원의 상금기준을 초과하여 관리성원에게 지불한 상금은 관리비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

-
- 제25조 (대외사업비의 지출)** 생산부문, 상업부문의 기업은 순판매액이 20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0.5%를, 200만US\$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의 0.3%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건설, 금융, 교통운수 같은 기타 봉사부문의 기업은 순영업액이 70만US\$까지는 그 금액의 1%를, 70만US\$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0.5%를 가산한 한도에서 대외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26조 (예비기금)** 기업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쓸 수 있다.
- 제27조 (자체기금)** 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예비기금과 리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원천이 있을 경우 자체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자체기금은 확대재생산, 기술발전 같은 기금으로 쓸 수 있다.
- 제28조 (차입금상환)** 기업은 차입금을 정한 기간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찾지 못하여 상환할 수 없는 차입금은 예비기금에 포함시킨다.
- 제29조 (채무의 평가)** 기업은 채무를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30조 (감독 및 제재)** 이 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이 규정을 어기고 재정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회계검증의 당사자)**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은 공업지구에 설립한 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한다.
- 제3조 (회계검증의 준거규정)** 회계검증은 이 규정과 공업지구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같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한다.
- 제4조 (회계검증의 대상)**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투자액이 100만US\$ 이상되거나 지난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US\$ 이상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이 아래부터는 기업이라 한다)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항에서 지적하지 않은 기업은 연간 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회계검증에 대한 간섭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의 회계검증사업을 담당한 독자적인 법인이다.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회계검증준칙작성)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회계검증준칙을 작성한다. 이 경우 중요내용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과 운영

제7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승인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회계검증사무소설립신청서의 심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가능수) 공업지구에는 2개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둔다. 2개 이상의 회계검증사무소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 공업지구에 회계검증사무소를 내오려는 회계검증조직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설립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경우 기본규약, 사무소성원의 자격, 경력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립신청서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기본업무, 기구와 정원수, 책임자와 성원의 이름, 자격, 자본금총액, 존속기간, 해산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심의등록, 설립일) 공업지구관리기관

은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 일안으로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업 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한 날을 회계검증사무소의 설립일로 한다.

제11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재등록) 기본규약, 기구와 정원수, 기본업무가 달라진 회계검증사무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 회계검증사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2.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3.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4.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5.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6. 이밖에 회계관련법규에 지적된 업무

제13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정원수와 자격) 회계검증사무소에는 3명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둔다. 회계검증원과 감정평가원(이 아래부터는 회계검증원이라 한다)은 해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부문에서 3년이상 일한 자가 될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자는 회계검증원으로 사업할 수 없다.

-
- 제14조 (회계검증원의 권한)** 회계검증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 것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장부와 현물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회계검증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 (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
- 제16조 (장부기록)**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정형을 해당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기록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 제17조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회계검증원은 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보고서의 부류, 검증과 관련한 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 제18조 (업무제한)** 회계검증원은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회계검증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회계검증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제19조 (위법행위처리)**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계검증보고서에 밝히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정할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검증료)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 상담과 관련한 검증료 또는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검증료와 봉사료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 (손해보상준비금과 손해보상)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마다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당기순리윤의 10%를 직전 회계년도총수입액의 10%가 될때까지 손해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손해보상준비금의 류용금지) 회계검증사무소는 손해보상준비금을 손해보상에만 써야 한다. 손해보상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쓰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제23조 (회계검증내용) 기업은 회계검증을 제때에 정확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속한다.

제24조 (투자검증의무)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기업, 총투자액의 10%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자증

서의 발급, 리운분배, 투자상환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제25조 (투자검증대상) 투자검증은 기업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 대하여 한다. 투자보고서에는 출자상태표와 화폐자산출자명세표, 현물자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26조 (투자검증기간) 기업창설투자에 대한 검증은 조업을 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통합, 분리에 대한 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끝낸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검증은 해당투자를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한다.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 회계검증사무소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고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 기업은 중고설비의 생산년월일과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내용년한, 사용한 기간 같은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문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제28조 (결산검증의 대상) 결산검증은 기업의 월,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월, 분기, 반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은 기업의 신청에 따른다. 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9조 (년간회계결산서의 제출기간)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를 회계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회계업무량이 특별히 많은 기업은 회계검증

사무소의 승인을 받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연간회계결산서를 낼 수도 있다.

제30조 (결산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원은 결산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검증보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결산서에 대한 설명서와 재정상태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회계결산서의 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구 회계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
2. 주요 회계정책 및 예측과 그 변경정형
3. 우발사항과 결산후 발생한 경제거래정형
4. 중요재산의 처분정형
5. 기업의 통합, 분리정형
6. 회계결산서의 중요항목
7. 회계결산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2조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 생산 및 경영상태
2. 리운의 확정과 분배상태
3. 자금의 증감과 회전상태
4. 재정상태, 경영성적, 현금류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5. 대차대조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33조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기간)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개월안으로 기업의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끝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검증을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와 연장기간을 공업지구세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청산검증대상) 청산검증대상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청산보고서이다. 청산보고서에는 청산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자금원천분배표, 재산실사표, 국가납부표 같은 것이 속한다.

제35조 (청산검증의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은 청산사업을 끝낸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청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산검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에 조직된 청산위원회의 사업을 종결할 수 없으며 기업등록을 삭제할 수 없다.

제36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회계검증사무소는 투자검증보고서, 결산검증보고서, 청산검증보고서의 사본을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해당 검증을 끝낸 날부터 7일안으로 내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

제37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에서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은 회계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 (감독통제방법)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 사무소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회계검증에서 엄중한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 (업무중지처벌)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루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6개월 이상 1년까지 중지시킨다. 돈이나 물품을 받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한 회계검증원의 업무를 1년 이상 중지시킨다. 회계검증원이 3회이상 업무중지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검증사무소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40조 (벌금) 벌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업무기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리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회계검증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1만 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대가를 약속하고 사실과 맞지 않게 회계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물품을 몰수하고 1만5,000US\$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 (연체료) 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의 계산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벌금통지서를 발급한 다음 7일이 지난 날부터 한다.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2006년 7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6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 통행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동차운행의 편의를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법인,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구밖에서의 자동차통행은 공화국의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
- 제3조 (자동차의 구분)**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차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속한다. 자동차의 세부적인 분류는 이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4조 (자동차의 등록의무)** 공업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동차의 등록은 의무적이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것을 목적으로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 (자동차의 번호판발급) 등록된 자동차에는 번호판을 준다. 임시로 리용하는 자동차, 등록수속중에 있는 자동차에는 임시표식판을 준다.

제6조 (자동차의 기술검사기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의 기술검사형식과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의 운전자격)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공화국의 운전면허심사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것을 자동차감독기관에 제기하여 교부받은 다음 자동차를 운전한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사유로 공업지구에 단기로 출입하거나 북과 남 해당 기관들사이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8조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사본의 제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기술검사증을 발급한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3일안으로 해당 문건의 사본을 자동차감독기관에 보낸다.

제9조 (수수료의 납부) 자동차를 등록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정해

진 수수료를 낸다.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자동차감독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자동차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1조 (등록의 구분) 자동차의 등록은 첫등록, 이동등록, 삭제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의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의 첫등록) 자동차의 첫등록은 공업지구에 새로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등록을 하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 들어온 날부터 7일 안으로 첫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자동차의 이동등록) 자동차의 이동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공업지구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15일, 증여받은 자동차를 20일, 상속받은 자동차를 3개월, 이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15일안으로 자동차이동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 (자동차등록신청서의 검토, 등록증발급) 자동차의 첫등록신청서 또는 이동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3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동차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한다.

제15조 (자동차번호판의 봉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등록된 자동차에 번호판을 맡아주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뜯을 수 없다.

제16조 (자동차의 립시표식판) 등록수속을 하거나 립시로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립시표식판을 달아준다. 립시표식판의 유효기간은 15일간이다.

제17조 (자동차의 등록삭제) 자동차의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폐기시켰을 경우
2. 구입한 자동차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돌려 보냈을 경우
3. 충돌, 화재 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다시 리용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완전히 내가려 할 경우
5. 이밖에 삭제등록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 (자동차등록의 삭제신청) 자동차소유자는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등록삭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19조 (등록을 삭제하였던 자동차의 등록) 삭제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은 제12조에 따른다.

제3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제20조 (기술검사의 구분)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구조변경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 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술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동차의 첫기술검사) 자동차의 첫기술검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첫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기되어 수리,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히 파손되어 수리복구한 자동차는 해당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는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차종, 차형, 차체번호, 능력, 모양 같은 것이 달라진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동차의 기술검사신청과 검사)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 날짜를 정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술검사증의 발급)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에 따르는 기술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된 자동차에는 기술검사증을 발급하여 준다.

제26조 (자동차의 장치물설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표식을 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동차의 통행

제27조 (교통지휘) 공업지구에서 교통지휘는 교통보안원이 한다. 자동차의 통행은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자동차의 달림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달림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는 정해진 달림선으로 통행하며 달림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와 종류, 차형, 통행목적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동차의 저속통행) 자동차는 사립길, 건능길표식이 있

는 곳, 정류소,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것에 의하여 차의운전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저속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동차의 따라 앞서기) 자동차는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 앞선 자동차를 따라 앞서려 할 경우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자동차는 따라 앞서려는 자동차에게 길을 내주어야 한다. 좁은 도로, 따라앞서금지표식이 있는 구간의 도로, 굽인돌이, 사곶길, 건늌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늌길 같은 곳에서는 따라앞서기를 할 수 없다.

제31조 (자동차의 어기기) 경사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먼저 본 자동차 또는 내려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서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동차의 정차와 주차장소) 멈추어서려는 자동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도로의 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다리, 사곶길, 철길건늌길, 시야가 제한된 경사길과 굽인돌이, 정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주차표식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적재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의 포장) 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싣지 말아야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짐은 포장하여 실어야 한다.

제34조 (인원을 태울수 없는 자동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탱크식화물차, 련결차와 강재, 통나무,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 것을 실은 자동차는 적재함에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보행자의 통행) 자동차는 건늬길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도로를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36조 (자동차의 사꺼길통행) 교통보안원,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꺼길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선 다음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꺼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들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자동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자동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자동차부터 통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자동차의 철길건늬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자동차는 건늬길 10M 앞에 세우고 련차가 통과하지 않는가를 확

인하며 안전신호를 받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자동차의 야간통행) 밤에 통행하는 자동차는 조명등을 켜고 보임거리를 보장하며 자동차가 서로 어길 경우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엇바꾸어 켜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특수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도로시설관리차 같은 특수차는 해당 경보장치와 표식등, 표식기재를 사용하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달림선에 표시한 속도보다 높은 속도 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즉시 자동차감독기관과 보험회사에 알리고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물건) 통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 자동차3자책임보험가입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운전사는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동차의 통행금지사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

지 않은 자동차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신호 장치가 불비한 자동차, 번호판, 림시표식판을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제5장 제재 및 신소

제44조 (벌금과 부과)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에 따르는 벌금의 부과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자동차의 억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7일까지 억류시킬 수 있다.

제46조 (추방) 이 규정을 어긴 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47조 (신소와 처리기일)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통행, 제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기술검사시관, 자동차감독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 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15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2006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2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의 기업과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의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속한다.
- 제3조 (환경보호사업의 담당자)**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 (환경보호사업의 선행)** 환경보호사업은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공업지구에서 개발, 건설, 생산을 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기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기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환경보호기준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방사성오염, 악취오염기준과 소음, 진동기준 같은 것이 속한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6조 (자연환경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기업과 개인은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사람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보호구의 설정) 공업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한다.
자연환경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 (산림자원의 보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지구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할 수 없다.

제9조 (동식물자원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지 말며 그 서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제10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의 보존) 기업과 개인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의 건설금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봉사시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다.

제12조 (수림화, 원림화) 기업과 개인은 공장, 도로, 철길의 주변과 공지에 환경보호에 유리하고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잔디, 꽃을 많이 심어 공업지구의 풍치를 돋구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제13조 (환경오염방지의 기본요구) 공업지구관리기관과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개발, 건설, 운영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보호계획에는 해당 대상의 개발, 건설, 운영계획과 대상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예측평가자료, 환경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환경보호계획의 제출)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기업과 개인은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검사를 받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연환경보호구와 주민지구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 먼지의 배출승인)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기중에 가스와 먼지를 직접 내보내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륄전기재의 운행금지) 기업과 개인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륄전기재를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악취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악취발생물질을 불태울 수 없다.

제20조 (소음, 진동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개발, 건설, 생산과정에 다른 기업이나 주민들이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기준을 초과하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오수, 폐수의 정화) 오수, 폐수를 내보내려는 기업과 개인은 오수나 폐수를 수질오염배출기준아래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역에서의 금지행위) 기업과 개인은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룬전기재를 청소하거나 거기에 오물을 버리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토지의 오염, 류실방지) 기업과 개인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대책을 세워 토지오염을 막아야 한다.
절토 또는 성토로 인한 토사의 류출을 방지하며 폭우로 흙과 모래가 하천과 수로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하수의 오염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오염물질의 발생원과 물잡이구조물관리를 바로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25조 (지반침하의 방지) 기업과 개인은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26조 (유독성물질의 취급) 유독성물질을 취급하려는 기업은 유독성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유독성물질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며 종류, 수량, 용도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폐기폐설물의 배출량보고) 기업은 폐기폐설물의 배출량을 정확히 장악기록하며 그 정형을 월에 1차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폐기폐설물의 보관) 폐기폐설물을 보관하려는 기업은 보관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그 주변에 울타리와 경계표 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을 담은 용기겉면에는 폐기폐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29조 (폐기폐설물의 운반) 폐기폐설물을 운반하려는 기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보고하며 운반도중에 폐기폐설물이 섞이거나 류출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폐설물의 처리)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려는 기업은 폐기폐설물처리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공업지구 밖으로 내보내려는 폐기폐설물의 처리신청서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폐기폐설물처리신청서에는 폐기폐설물의 종류, 성분분석자료, 수량, 환경영향평가자료, 환경보호담보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31조 (환경의 오염경보)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정화하여 내보낸 우수, 폐수가 특수한 기상수문조건과 사정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환경오염경보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상태의 조사, 측정, 분석)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의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조사, 측정, 분석방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3조 (자료기록)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폐기폐설물의 보관, 처리정형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보호사업정형의 보고)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계획실행, 환경보호사업정형을 분기에 1차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

제35조 (감독통제기관) 공업지구의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감시체계의 수립)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감시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경상태를 조사장악하며 기업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정상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 (환경보호시설의 관리)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환경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보수주기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재)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오염방지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제39조 (분쟁해결)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상사중재절차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301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305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311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 316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

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

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나. 적재량 또는 정원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

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가 계 획 위 원 회 1 부 위 원 장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 북 측 |
|------------|-------------|
| 통관 | 세관통과 |
| 물품 | 물건 |
| 말한다 | 의미한다 |
| 열차·차량운행사무소 |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
| 명부 | 명단 |
| 상호 | 호상 |
| 통관절차 | 세관수속과 검사 |
| 송하인 | 송화인 |
| 수하인 | 수화인 |
| 운송 | 수송 |
| 운송인 | 수송자 |
| 컨테이너 | 짐합 |
| 봉인의 이상유무 | 봉인의 상태 |
| 개장 | 개봉 |
| 서명 | 수표 |
| 발효 | 효력발생 |
| 문본 | 문건 |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 통행차량, 차량 | 운수수단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

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 |
|-----------|-----------|
| 남 측 서명 | 북 측 수표 |
| 발효 | 효력발생 |
| 문본 | 문건 |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 말한다 | 의미한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 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 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 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 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게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 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 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 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범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범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범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 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방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 | |
|------------|-------------|
| 남북장관급회담 | 북남상급회담 |
|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 북측대표단 단장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통일부장관 정세현 | 내각책임참사 김령성 |



4대 경협 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327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335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354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36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 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 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
2. 납과 복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납과 복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납과 복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북 남 상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보장(제목에서) | 북 측 보호(제목에서) |
|-----------------|-----------------|
| 투자자산 | 투자재산 |
| 지분 | 출자몫 |
| 의장권 | 공업도안권 |
| 천연자원 | 자연부원 |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기업리권 |
| 국공채 | 공채 |
| 법령 | 법 |
| 법인 | 실체 |
| 자연인 | 개별적인 사람 |
| 수용 | 몰수 |
| 외환시장 | 외국환자시장 |
| 자유태환성통화 | 전환성화폐 |
| 정관 | 규약 |
| 서명 | 수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 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월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

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
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
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
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
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
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
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 기
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
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
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

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

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

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지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

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

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 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

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 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

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 측 을 대 표 하 여 | 북 측 을 대 표 하 여 |
| 남 북 장 관 급 회 담 | 북 남 상 급 회 담 |
|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 북 측 대 표 단 단 장 |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 북 측 |
|---------------|--------------|
| 고정사업장 | 고정영업장 |
| 사업활동 | 경영활동 |
| 영위 | 진행 |
| 인적용역을 제공 | 봉사활동을 진행 |
| 권한있는 당국 | 해당기관 |
| 거주자 판정 | 거주자 확정 |
| 주소, 거소, 관리장소 | 거류지, 거주지, |
| 생활하는 주거 | 운영지 |
| 실질적인 관리장소 | 생활하는 살림집 |
| 건축장소, 건설, 설치, | 실제적인 경영지 |
| 조립공사 | 건설장, 설치, 조립장 |
| 재화 | 물품 |
| 지배관계 | 종속관계 |
| 독립적 인적용역을 | 독자적인 |
| 수행이용 | 개인봉사활동 리용 |
| 컨테이너 | 집합 |
| 국제적인 경영체 | 국제적인 운영체 |
| 조정 | 조절 |
| 발생 | 조성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

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측을 대표하여 | 북측을 대표하여 |
| 남북장관급회담 | 북남상급회담 |
| 남측대표단수석대표 | 북측대표단단장 |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통일부장관 박재규 |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측 | 북측 |
|--------------|-----------------|
| 중재판정 | 재결 |
| 중재인 | 재결원 |
| 의장중재인 | 책임재결원 |
| 중재판정부 | 재결원협의회 |
| 중재인명부 | 재결원명단 |
| 법령 | 법 |
| 활동보장 | 사업보장 |
| 국제법의 일반원칙 |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
| 구성하다 | 내오다 |
|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
| 서명 | 수표 |
| 문본 | 문건 |
|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박재규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전금진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2000년 | 북 측 주체 89(2000)년 |
|--------------|---------------------|
| 역사적인 남북공동 | 력사적인 |
| 선언 | 공동선언 |
| 용역거래대금 | 봉사거래대금 |
| 당해 연도 | 해당 년도 |
| 청산계정 | 청산돈자리 |
| 미달러화 | 미팔라 |
| 청산결제기간 | 청산결제주기 |
| 자본의 이동 | 자금이동 |
| 장관급회담 | 상급회담 |
| 서명 | 수표 |
| 발효 | 효력발생 |
| 문본 | 문건 |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기타 관련 합의서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 · · 369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 · · · · 376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 · · · 38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 · · · 396
- 동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 통신 ·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 · · · 410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 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 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

- 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주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다. 우편물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 측 | 북 측 |
|------------|-------|
| 상호 | 호상 |
| 송하인 | 판매자 |
| 수하인 | 구매자 |
| 운송수단 | 수송수단 |
| 생산장소 | 생산지 |
| 포장의 수 및 종류 | 포장/표식 |
| 중량 | 무게 |
| 발급일자 | 발급날자 |
| 한글 | 조선어 |
| 당해 물품 | 해당물품 |
| 인장 | 공인 |
| 도축 | 도살 |
| 냉동 | 랭동 |
| 냉장 | 랭장 |
| 쇠고기 | 소고기 |
| 송품장 | 적선문건 |
| 사유 | 리유 |
| 여행자 | 려행자 |
| 별송품 | 발송품 |
| 진위 | 진실성 |
| 서명 | 수표 |
| 부속서 | 부록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

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

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남 측 구성 | 북 측 조직 |
|--------------|-------------|
| 이하 | 이 아래부터 |
|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
| 보좌인원 | 보장성원 |
| 중재인 | 재결원 |
| 기피신청 | 거부신청 |
| 이의신청 | 반대의견 제기 |
| 중재판정부 | 재결원협의회 |
| 중재판정 | 재결 |
| 본다 | 인정한다 |
| 서면 | 문서교환 방식 |
| 서명 | 수표 |
| 중재인명부 | 재결원명단 |
| 열거 | 지적 |
| 교부 | 제시 |
| 분쟁해결절차 | 사건심리 |
| 서류 | 문건 |
| 문서보관소 | 문서보관장소 |
| 연락관 | 연락대표 |
| 수령 | 문서접수날자 |
| 문본 | 문건 |
| 원본 | 원문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사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 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 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

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 진 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박 창 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 |
|---------|-----------|
| 남측 | 북측 |
| 정의 | 총칙 |
| 노선 | 로정 |
| 사항 | 문제 |
| 표지 | 표식 |
| 부착 | 표기 |
| 사실 | 정형 |
| 탑승인원 | 차량에 싣는 인원 |
| 적재화물 | 싣는 화물 |
| 위해 | 오염 |
| 각호 | 조항 |
| 상호주의 원칙 | 호상성의 원칙 |
| 귀책사유 | 잘못 |
| 지원 | 방조 |
| 소요비용 | 소비비용 |
| 부속서 | 보충합의서(부록) |
| 문본 | 원문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 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 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안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

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 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

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재공업성 부장 최 영 건

부록 1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 No. | 직 명 |
|-----|---|
| 1 |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
| 2 |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
| 3 |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
| 4 |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
| 5 |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
| 6 |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
| 7 | 자동차운전원 |
| 8 | 사고조사 담당직원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남측 정의 | 북측 총칙 |
|----------|-----------|
| 철도직원 | 철도일군 |
| 인명 | 사람 |
| 따른다. | 준한다. |
| 부여한 | 있는 |
| 사항 | 문제 |
| 개최 | 진행, 조직 |
| 정산 | 청산 |
| 일일 | 일간, 일 |
| 입환작업 | 차갈이작업 |
| 채류하는 동안 | 머무르는 기간 |
| 인도·인수 | 인수도 |
| 조정 | 조절 |
| 운송수단 | 운수수단 |
| 상호 | 호상 |
| 명시된 | 지적된 |
| 상시출입증 | 고정출입증 |
| 탑승인원 | 열차에 싣는 인원 |
| 적재화물 | 싣는 화물 |
| 총포류 | 총기류 |
| 운전정리실 | 운전지휘실 |
| 사실 | 정형 |
| 상황 | 정황 |
| 시행 | 집행 |
| 부속서 | 부록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 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

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통 일 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 전화 : 02-3783-7439
 - FAX : 02-3783-7495
- 홈페이지 : www.unikorea.go.kr

